여성관련 현안 및 정책자료

제 2 호
1997년 2월 18일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Tel : xxxxxxx ,2
Fax: xxxxxxx



(여성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모습: 1996.12.6)

97년도 여성특위의 활동계획

신낙균/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해는 우리 여성특별위원회가 여러가지 의미있는, 위원회의 모범을 보여준 뜻깊은 해였습니다. 여성특위에 회부된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 이하 전문위원실의 열의와 노력 덕분에 여성특위는 한층 활성화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올해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들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우선 지난해 최대의 결실인 가정폭력방지 관련법률안과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성특위의 합의된 의견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이므로, 이 합의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것이 첫 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특위 차원의 입법활동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가족법, 영유아보육법, 상속세법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성계와의 교류를 한층 더 활성화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여성단체의 장은 물론 학계, 여성법조인, 여성경제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과 정책개발을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관련 입법활동, 여성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은 정책개발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여성특위 차원의 공청회는 여성관련 법률중 성차별적 조항들의 개선방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제도의 개선방향, 성차별적 관습타파를 위한 의식개혁방안 등을 논의하는 장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여성정책면에서 선진적인 경험을 갖고있는 국가들의 의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관심사를 나누고 좋은 정책의 본보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갖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특위의 활동을 홍보하고 여성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여성관련 현안 및 정책자료』를 올해에도 꾸준히 진행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자료집은 여성특위 소속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299명의 의원님 전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여성문제와 인식의 나눔으로 올해는 더욱 알찬 결실을 맺는 해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명단

위원장: 신낙균(국민회의, 보건복지위원회)
간 사: 권영자(신한국당, 행정위원회)
추미애(국민회의, 내무위원회)
변웅전(자민련, 건설교통위원회)
위 원:

<신한국당>
김영선(행정위) 김충일(통신과학기술위)
박종웅(문화체육공보위) 오양순(보건복지위)
이사철(법제사법위) 이상현(행정위)
이신행(환경노동위) 임진출(문화체육공보위)
전용원(통상산업위)

<새정치국민회의>
김한길(교육위) 정희경(교육위)
한영애(환경노동위)

<자유민주연합>
김칠환(통상산업위) 정우택(환경노동위)

<어느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김홍신(보건복지위) 이미경(환경노동위)

여성특별위원회 활동보고

[redacted]

<<공식회의>>

◆ 제181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 일 시 : 1996년 10월 24일 11: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제501호실)
* 출석위원: 신낙균위원장, 위원: 권영자,김영선, 박종웅,오양순,이상현,임진출,전용원, 김한길,한영애,변웅전,정우택,김홍신, 이미경
* 안 건 : 간사선임의 건 - 자유민주연합의 정우택 간사가 사임하고 같은 교섭단체 소속의 변웅전위원을 선임

◆ 제181회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

* 일 시 : 1996년 12월 6일 13:4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제501호실)
* 출석위원: 신낙균위원장, 위원: 권영자,김충일, 박종웅,오양순,이사철,이상현,임진출, 추미애,김한길,한영애,변웅전,김홍신, 이미경
* 안 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개정법률안등(7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redacted]
2.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redacted]
3.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redacted]
4. 家庭暴力防止法案 [redacted]
5.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案 [redacted]
6. 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案 [redacted]
7. 家庭暴力防止法案 [redacted]

- 제안설명
추미애의원(국민회의)

임진출의원(신한국당)
변웅전의원(자민련)-유인물로 대체

- 전문위원 검토보고(유인물로 대체): 여성특위에 회부된 7건의 법률안 각각에 대한 검토보고

- 대체토론: 김홍신,한영애,추미애,이미경,
이사철,권영자,김한길,이상현의원
김홍신의원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질의 및 각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구성:
= 법률안심사 소위원회는 6인으로 구성하되 신한국당(3인), 국민회의(1인), 자민련(1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인)으로 정함
= 소위원회는 법률안 심사종료 후 심사경과 및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시할 의견서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redacted]

◆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 일 시 : 1996년 12월 9일 15:28
* 장 소 : 특별위원회 소회의실(제535호실)
* 참석위원: 권영자소위원장, 위원: 김영선,이사철,
추미애,이미경
* 심사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3건 및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안 4건에 대한 대체토론 및 축조심사후 소관상임위에 제시할 3건의 의견서를 채택함

◆ 제181회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특별위원회

* 일 시 : 1996년 12월 12일 11:15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제501호실)
* 출석위원: 신낙균위원장, 위원:권영자,김충일,
박종웅,오양순,이사철,임진출,김한길,
한영애,변웅전,김칠환,정우택,이미경.
* 안 건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등(7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권영자)의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
= 이미경의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고소)를 신한국당안 제22조3(신고의무)로 한 점에 대하여 소수의견 첨부를 제의함. 이에 대해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은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심도있게 하도록 구두로 요구하는 방안으로 상호 양해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함

<<간사회의>>

여성특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간사회의를 가졌음.

* 일 시 : 1996년 11월 26일 16:10
* 참석위원: 신낙균위원장, 간사: 권영자,변웅전
위원: 이미경
* 안 건 : 여성특별위원회 공식회의 일정에 관한 건

1. 회부된 법률안 상정 및 심사에 관한 건
- 공식회의 일자는 12월초 본회의 개의시를 택하도록 함.
- 여성특위에 회부된 법률안들 중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3건:국민회의,신한국당,자민련)과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안(4건: 신한국당 2건, 국민회의, 자민련) 등 우선적으로 2종류의 법안 7건을 상정하기로 함. 회부된 법률안 중 '남녀고용평등법'중 개정안은 다음 회기중에 상정하기로 함.

2.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6인으로 구성하되 교섭단체별로 3(신한국):1(국민):1(자민):1(비교섭단체)로 함.

- 소위원회의 권한에 있어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권까지만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심사결과를 직접 소관위원회에 의견제시하는 권한까지 부여할 것인지는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3. 공청회 개최에 관한 건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 그리고 각 교섭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음.
- 그러나 12월초에 전체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청회 개최는 다음 기회로 연기함.

<<전·현직 여성국회의원 간담회>>

* 일 시: 1996년 11월 13일 12:00
* 장 소: 삼청동 '용수산'
* 목 적: 제15대국회 여성특별위원회의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전·현직 여성국회의원들간의 상견례 및 여성특위 활동에 관한 폭넓은 의견교환.
* 참석자: 15명

전직의원 - 김영정,김윤덕,김장숙,김정례,김현자, 문용수,도영심,서영희,신동순,이경숙, 이범준

현직의원 - 신낙균,임진출,오양순,이미경



<<직원간담회>>

제181회 정기국회 회기중 각 정당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제3차 직원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일 시: 1996년 10월 28일 14:00
* 주 제: [redacted]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redacted] 개정방향
* 발표자: 김삼화변호사
* 참석자: 여성특위 직원 및 의원 보좌관 등 10명
* 발표요지:

1. [redacted]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성폭력특별법)의 의미.

성폭력과 관련한 처벌규정이 그동안 형법과 기타 특별법에 산재하여 있었던 것을 본법에 통합하고 특히 절차법까지 함께 규정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법임.

2. 현 성폭력특별법[redacted] 미비점

여성계에서는 본법에 대하여 친고죄폐지, 재정신청제도 도입, 증거보전 절차, 배상명령제도, 중강제추행죄 도입, 성희롱행위규제, 부부강간 등의 도입을 주장하여 왔음.

3.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개정안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①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② 피해자의 재정신청권 신설
③ 친족범위의 확대

(2) 차이점

< 신한국당안 >

- 현행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
- 특수강도등 미수범의 강간처벌규정신설
- 일부의 반의사불벌죄 전환
- 13세미만자에 대한 강간등 가중처벌
- 신뢰관계자의 동석
- 보호자, 치료자의 신고의무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강화

< 국민회의안 >

- 비동의간음죄 신설
- 중강제추행죄 신설
- 본법의 친고죄 폐지
- 피해자대리인제도 신설
- 증거보전청구권 신설
- 배상명령제도 신설
- 피해자 진술서의 증거능력 인정
-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무, 배상전 치료비 보조, 치료의무 규정

(※ 위의 비교는 각당의 공청회에서 제시된 개정안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므로 국회에 제출한 최종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음)

4. 수정, 첨가할 개정내용

양당 모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흔

적이 보이고 특히 국민회의의 개정안은 예성계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반대가 예상되며, 친고죄 폐지여부에 관한 논란도 상당할 듯함.(통신매체이용음란, 성희롱 등은 친고죄로 두는 것이 좋을 듯함)

- 신한국당 개정안에서 제2조제1항제1호 삭제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의 관계가 문제될 듯함.
- 국민회의 개정안중 피의자가 중요부분 자백시에는 피해자 진술서도 대부분 동의하는 것이 상례임에 비추어 특별히 피해자 진술서의 증거능력 인정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지 의문시 됨.

* 질의응답:

<질문> 성폭력범죄의 경우 가중처벌, 범죄구성요건의 범위확대 등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타범죄 처벌과의 형평성,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법앞의 평등' 이념구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김부남, 김보은 사건에서 보듯이 그 피해가 수십년이 지나도록 치유가 되지않아 인생자체가 황폐화 될 수 있고 전통적으로 여자의 정조관념을 강조하다보니 피해여성 스스로 피해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여성들 스스로 피해의식을 떨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타범죄에 비하여 특별히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질문> 현행 형법 제299조와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범죄구성요건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차이점?

☞ ①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죄
③ 두죄 모두 폭행 또는 협박등 강제력의 동원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함. 다만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은 민법상 인정되는 심신상실(예컨대 극도의 정신질환자 등)을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신체적으로는 정상적인 부녀 또는 사람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시 성립됨(예컨대 의사가 치료중인 소녀를 필요한 시술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간음시, 어둠 또는 잠결에 남편과 정교한 것으로 오인한 부녀를 간음). 반면에 본법 제8조의 신체장애는 일반적으로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장애로 인하여 항거하지 못함을 이용한 간음, 추행시 처벌함.

<질문> 본법 제7조제4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 본법 제7조제1항의 존속 등 연장의 친족(4촌이내의 혈족)규정은 개정이 필요함: 친족에 인척을 포함해야 함
- 인척 포함시에는 사실혼 상태인 의부,계부,계모 등이 사실상 친족에 해당됨

<질문> 본법 및 개정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범죄구성요건 및 죄실행방법의 차이는?

☞ ①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 성전환수술한 남성은 피해자가 될 수 없음.
② 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용 부녀자 간음
③ 간음: 폭행, 협박이 동반되지 아니한 성행위로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예; 혼인빙자 간음)
④ 추행: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음란행위
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⑥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이용한 추행

1996년도 181회 정기국회에 제출된 여성관련 법률안, 청원 및 진정 현황

(1996년 9월 2일 - 12월18일)

<<여성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 改正法律案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이용 간음 또는 추행한 자
② 성폭력특별법 제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

* 발의자: 신낙균,이해찬,정희경,추미애,한영애,김한길,이성재,박상천의원 외 71인
* 발의년월일: 1996년 10월 30일
*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현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

고 최근에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현행 법률의 미비점 등에서 비롯되는 범죄들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형벌에 확실성을 기함으로써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이고, 기존의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피해자보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반사회적 성폭력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성폭력의 개념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규정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성폭력범죄 긴급신고전화를 신설·운영하도록 함

㉰국무총리소속하에 '성폭력범죄대책위원회' 설치

㉱친족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까지로 확대

㉲장애인 범위를 신체장애에서 정신장애로까지 확대

㉳'중강제추행죄'를 신설

㉴친고죄를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도입

㉵피해자의 재정신청제도를 신설하고 증거보전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 改正法律案

* 발의자: 권영자, 임진출, 오양순, 김영선의원 외 149인

* 발의년월일: 1996년 11월 11일

*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현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중 친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사항,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규정에 대한 사항, 피해자의 절차참여에 대한 사항 등의 개정 및 신설을 통하여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골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규정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근거규정 마련

㉯친족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에 2촌이내의 인척포함,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신설

㉰장애인 범위를 신체장애에서 정신장애로까지 확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비친고죄로 규정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재판절차 참여권 규정 신설

㉴18세미만자를 보호·교육·치료하는 시설책임자의 신고의무규정 신설

㉵피해자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한 자,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마련,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목적외 운영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강화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 改正法律案

* 발의자: 정상천,조종석,함석재의원 외 46인

* 발의년월일: 1996년 11월 13일

*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최근 근친간,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소녀가장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행이 발생하여 우리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려고 함.

* 주요골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을 추가함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사항에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추가함

㉰친족범위를 민법의 친족범위로 확대함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협력없이 상담교사, 상담원의 고소에 의하여 공소제기 가능

㉲피해자의 수사에 전담여성경찰의 배치를 의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함

◆家庭暴力防止法案

* 발의자: 신낙균,이해찬,정희경,추미애,한영애,김한길,이성재의원 외 72인

* 발의년월일: 1996년 10월 30일

*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가정폭력은 지속적,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이상 해당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안임. 이 법안은 그 입법의도를 '가정의 해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오히려 국가가 신속하게 개입하여 폭력을 제지하고 그 폭력성을 교정하려는 여러가지 시도를 행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한 보호를 베품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가정'을 보호·회복·육성하려는 데 두고 있음.

* 주요골자: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원할 때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가정폭력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가능.

㉱가정폭력사건은 누구든지 신고 가능하며, 가정폭력피해자 중 스스로 신고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아동, 정신장애가 있는 노인, 정신장애자 등에 대해서는 이들을 보호·교육·상담·치료하는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함. 신고의무 태만시는 과태료 처분에 과함

㉲경찰은 검사의 지휘없이 가정폭력에 최초로 대응할 수 있으며, 즉시 현장에 임하여 경고, 폭력제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피해자 보호를 위해 24시간이내에 퇴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피해자가 미성년자, 70세이상 노인, 장애인인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담당판사는 행위자를 임시감호조치 할 수 있음

㉵보호처분의 종류는 10가지로 함

㉶담당판사는 보호처분을 통해 교정의 가능성이 없고 죄질이 중대한 경우에는 불처분결정을 해야하며,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음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함

㉸허위사실을 고소 또는 신고한 자, 행위자의 보호처분불이행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시, 보도금지 위반시 처벌규정 명시함.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案

* 발의자: 권영자,김영선,임진출,오양순의원 외 149인

* 발의년월일: 1996년 11월 22일

*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가정폭력은 이제 더이상 가정 내부구성원 사이의 사생활 문제로만 방치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고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정폭력범죄를 가정 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형법상의 일부 범죄 및 가중처벌되는 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형사처벌의 특례로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長의 고발의무,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의무와 신속처리의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규정과 근친자에 대한 증언거부권에 대한 특례, 심리의 비공개 등을 규정함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事物管轄은 합의부로 함.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제도 신설, 심리는 비공개 원칙.

㉱보호처분은 5가지를 규정하고 소요비용은 행위자 또는 국가(부담능력이 없는 경우)가 부담함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서 피해자에게 통지를 하고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권을 부여함. 심리불개시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권리부여

㉳보호처분불이행죄 처벌

㉴보도금지규정의 위반시에는 형사처벌 함

◆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案

* 발의자: 권영자,김영선,임진출,오양순의원 외 149인

* 발의년월일: 1996년 11월 22일

*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가정폭력문제 상담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자 함

㉯위㉮항의 내용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는 그 규율대상·규율내용 및 법집행기관을 각각 달리하고, 두가지 내용을 하나의 법률안에 담는 경우 현실적으로 처벌보다 보호에 관한

규정에 관심이 적어지거나 실효성이 없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제도적 장치마련과 재원의 조달 의무를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은 상담소를(신고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호시설을(허가제) 설치·운영할 수 있음

㉰상담소, 보호시설 및 피해자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하여 영리목적의 운영금지의무와 비밀엄수 의무를 부과함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각종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벌금, 과태료로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둠

◆家庭暴力防止法案

* 발의자: 함석재의원 외 48인

* 발의년월일: 1996년 11월 28일

*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그동안 가정폭력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됨으로써 그 현실적 심각성에 비해 은폐되거나 간과되어 왔음. 따라서 가정폭력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구조와 치료 및 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보호처분과 형사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려 함.

* 주요골자:

㉮가정폭력사건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고소, 고발 가능

㉰신고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출동하여 조치를 취해야 함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건의 송치·이송일로부터 2월이내에 종료하도록 함

㉲법원은 폭력행위자에게 임시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 정신보건시설에의 수용위탁, 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담당판사의 인정에 의해 검찰청으로 송치한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또한 소요경비를 보조하도록 함

㉵법원에서 처리중이거나 처리한 가정폭력행위에 관하여 보도금지를 규정함

※ 이상 7건의 법률안은 현재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임

<<여성특별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았으나 여성과 관련된 법률안 >>

◆相續稅法改正法律案

* 제출자: 정부

* 제출년월일: 1996년 10월 2일

* 소관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 제안이유: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 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여성관련부분): 현행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결혼년수×1,200만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 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억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음. 이를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자 함

* 심사결과: 1996년 12월 13일 수정의결됨(단, 여성관련부분은 원안대로 확정됨)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

* 발의자: 김문수,정영훈,서한샘,김중위,박범진,서상목,손학규,함종한,홍문종,조웅규,김덕룡의원 외 13인

* 제출년월일: 1996년 10월 24일

*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학교급식법」에 의하면 학교안에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학교급식시설은 학교안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든 학교에 급식시설을 갖추는데는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급식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학교의 경우 급식실시가 어려움. 따라서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조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학교에서 원하는 경우, 위탁급식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외부의 급식이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

* 심사결과: 1996년 12월 11일 수정의결됨(대부분의 내용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

◆障碍人·老人·姙産婦등移動弱者의自由로운社會的移動·接近과社會的情報에의接近을保障하기위한接近保障基本法案

* 발의자: 이성재,이재선,신낙균,김한길의원외 68인

* 발의년월일: 1996년 11월 30일

*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받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과 건물 및 시설물,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점에서 우리사회는 감옥과 같다. 그러므로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함.

* 주요골자: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편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종합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 편의시설심의위원회를 둠.

* 심사결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임.

◆障碍人및老弱者의便宜增進에관한法律

* 발의자: 백남치,정영훈,황성균,김명섭,서정화,김찬우,오양순,정의화,황규선,황우려,홍인길,이재오,이신범,이상현의원 외 7인

* 발의년월일: 1996년 11월 30일

*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아동·임산부들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편의시설, 보장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정하고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국가등은 공원 등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에 보장구를 비치하여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도록 하고, 편의증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장애인편의시설보장구지급재단을 설립하고 정부는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함. 장애인·노약자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작된 인간존중물품에 대하여 '인간존중마크'를 부착하도록 함.

* 심사결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임.

<<청원>>

◆女性會館建立에따른國庫支援에관한請願

* 접수년월일: 1996년 9월 13일

* 청원인: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장 신창현

* 소개의원: 안상수의원

*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요지: 의왕시는 여성의 독자적인 활용공간인 여성회관을 건립코자 하나 시 재정 자립도가 낮아 재정부담이 어려우며 시 전체 면적의 93%가 개발제한구역이라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여성회관건립에 따른 국고지원과 개발제한구역내에 여성회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임.

* 심사결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임.

◆日本軍慰安婦被害者에대한生活安定支援金增額에관한請願

* 접수년월일: 1996년 9월 19일
* 청원인: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성봉희
* 소개의원: 이미경의원 외 13인
*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요지: 정부는「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에 의하여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에게 매월 25만원과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10여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추가지급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생계유지에도 어려운 실정임. 또한 일본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민간기금을 조성,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짓고자 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일본정부의 국제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위안부피해자의 생계와 지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지원금을 매월 5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해 달라는 청원임.
* 심사결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임.

** 참조: 보건복지부에서는 1997년 1월부터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음.*

◆都市公園法및同施行規則改正에관한請願

* 접수년월일: 1996년 10월 21일
* 청원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이미선 외 470인
* 소개의원: 박주천의원 외 14인
*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 요지: 청원인은 마포어린이집 자모들로서 마포어린이집은 '77년 설치된 이래 건물의 노후와 냉·난방시설의 부족으로 보육시설로서 부족한 점이 많고 또한 서울의 도시공원내에 소재하고 있는 39개소 어린이집 대부분도 공간협소 및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보육기능에 부적합한 실정임. 이는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에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시행규칙제5조의 건폐율(100분의5이하)규정의 제한을 받아 시설의 증·개축이 불가능한데 원인이 있음. 따라서 도시공원법제2조제2항의 교양시설에 어린이집이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동법시행규칙제5조의 건폐율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달라는 내용임.
* 심사결과: 본회의에 附議하지 않기로 함.

◆家庭暴力防止法制定에관한請願

* 접수년월일: 1996년 10월 30일
* 청원인: 서울시 중구 장충동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희,신혜수,김창국 외 85,505인
* 소개의원: 이미경의원 외 19인
*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요지: 가정폭력은 여성, 아동, 노인 등 주로 약자들을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인해 사회적으로는 가족해체의 주원인이 되며, 결국 사회폭력으로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문제를 사생활 문제로 국한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바, 여성, 아동, 노인 등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녕보장 및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여 달라는 청원임.
* 심사결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임.

◆男女雇傭平等法改正에관한請願

* 접수년월일: 1996년 11월 13일
* 청원인: 서울시 중구 장충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인상, 권영길, 지은희 외 14인
* 소개의원: 이미경의원
*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요지: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직접적인 성차별이 어려워진 현실을 악용하여 신인사제도 도입, 비정규직의 여성인력채용 등 간접적인 성차별 고용·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장내 평등실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음. 또한 직장내 성희롱도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여성들의 근로조건 및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임.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성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교육, 배치 등 근로조건과 환경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주기 바라는 청원임.
* 심사결과: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임.

※ 그외 통일외무위원회에는 [redacted]

[redacted] *996년 8월 13일 접수)이 계류중이며, 보건복지위원회에는* [redacted] *996년 8월14일 접수)이 계류중임.*

< 진정 >>

◆家庭暴力防止特別法制定에관한입법진정

* 접수년월일: 1996년 12월 5일
* 청원인: 경기도 수원시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경기여성연대 박남식
* 요지: 진정한 가정평화의 유지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방지특별법을 제정하여 달라는 입법진정임.

①「가정폭력에관한특별법」안의 명칭은 법률의 목적을 구체화하여「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정하고, ②가정폭력의 조기발견 및 초기대처를 위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처우금지조항을 두며, ③가정보호처분의 범위와 종류를 규정하며, ④피해자의 특정보호처분신청권을 부여하고 보조인제도를 도입하며,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⑥민간단체의 상담소 설치·운영사항은 신고제로 하는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입법진정임.

* 심사결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임

제181회국회(정기회) 본회의 발언중 여성관련부분 지상중계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redacted]

" … 정부는 女性發展基本法에 따라 내년에도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것입니다. 특히 女性發展基金을 새로 설치하여 여성의 발전과 역할증대를 위한 사업을 실효성있게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근로여성의 사회참여가 용이하도록 아동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직업훈련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여성고령자 비진학청소년 등 경제활동이 가능한 잠재인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對政府 질문: 여성관련부분

◆ 정신대에 끌려간 우리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사건에 대하여 일본인 정신대였던 히로따시의 증언에 의하면 마닐라 교외의 밀림속에서 한국여성들을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집단학살했다고 함. 우리가 일본 천황으로부터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된 사과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가해당사자의 참회를 듣는 것이 더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함.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하여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외무부차관의 견해는? (정몽준의원)

☞ (외무부차관 답변) 히로따시의 증언과 관련하여 정부는 91년말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히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가 있음. 우리 정부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여 92년 7월 이를 발표한 바가 있으며, 일본 정부는 92년 7

월과 93년 8월에 조사결과를 우리측에 제출하는 한편 일본 관방장관담화를 통해 당시 일본정부가 관여하였으며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사죄의 뜻을 표명한 바가 있음.

◆ 정부의 女性雇傭割當制 시행에 적극 찬성하며 여성고용할당제의 민간기업 도입에 정부차원의 검토를 촉구함. 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한 접근방법과 이 제도의 영향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구천서의원)

☞ (국무총리 답변)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세계화 정보화에 대비하여 여성인력을 활용,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96년도부터 공무원 채용시에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공기업의 직원채용시에도 여성고용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정부와 공공부분에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간기업에서도 자율적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이 확산되도록 정부는 노력하겠으며,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위해서 보육시설의 확충과 여성능력향상을 위한 전문직업교육 및 훈련의 강화를 통해 민간기업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는 가정의 생계를 가장한 사람에게만 의지하는 소득구조와 고급 여성인력의 취업을 막는데 문제가 있음.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彈力勤勞時間制나 출산·육아후 재취업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여성고용촉진과 함께 고임금 문제의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김선길의원)

☞ (국무총리 답변) 정부에서도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여성의 취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육아휴직제를 활성화하고 영유아보육사업 확충대책에 의거해서 지난해부터 3개년간 총 1조3,000억원을 투입해서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음. 또한 제시하신 탄력근로시간제나 출산·육아후 재취업보장 확대문제 등은 기혼여성의 취업을 적극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하겠음.

◆ 여중생이 시험도중 길을 가다가 출산하고, 직·간접 매춘여성이 150만명으로 추정되며 가정주부가 과외비 마련을 위해 매춘을 하고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3위인 우리 사회는 도덕적 불감증과 극도의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로 인해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상태에 빠져있는데 이의 원인과 한국병 치유의 방안을 무엇으로 보시는지? (한영애의원)

☞ (국무총리 답변) 정부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광범위한 개혁조치를 추진해 왔고 많은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 정부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보호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사회의 정상성과 합리성을 든든하게 하기 위한 개혁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겠음.

◆ 인권단체가 한총련사태와 관련해서 연행된 학생 108명을 조사한 결과 성폭행 36건, 성추행 41건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함. 한총련의 이적성 문제와 연행 여학생의 인권유린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사실의 조사지시는 내렸는지? (한영애의원)

◆ 연세대 시위에 참가한 한총련 학생들의 진압과정에서 여학생 성추행사건의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함 (이미경의원)

☞ (국무총리 답변) 어떠한 경우에도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임.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히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며 이문제와 관련해서 총리의 입장에서 즉각 지시한 사실이 있음. 보고에 의하면 학생들을 검거하는 과정이 대낮에 이루어졌고 많은 학생, 학부모, 언론이 지켜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폭행 등 분명한 위법사실은 있을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음.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현재 경찰에서 더 정밀하게 사실여부를 규명하고 있음.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만약에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겠음.

☞ (내무부장관 답변) 당시 연세대 종합관은 학생들의 방화로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극렬하게 저항하는 극도로 긴박한 상태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경이 사망하였고 경찰관 864명이 부상당하였음. 다만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강제성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함. 그러나 수많은 보도진, 교직원, 학부모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연행하였고 조사과정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추행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생각함. 인권단체가 제시한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고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일부 여성단체 명의로 여학생 성추행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건의문이 접수되어 현재 경찰에서 진위여부를 규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밝혀지면 의법조치하겠음.

◆ 국가공무원 90만명중 여성은 19.1%인 17만명으로 아직 소수임. 더욱이 상위직인 5급이상은 0.1%인 단 200명에 불과하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는 단 1명의 일반직 여성공무원도 없음. 총리는

여성의 상위직이 적은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한영애의원)

☞ (국무총리 답변) 총리실에 직원이 많지만 확실치 않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못함을 양해바람. 관심을 많이 갖고 다른 총리보다는 덜 실망하도록 노력하겠음.

◆ 우리나라에서 여자태아에 대한 임신중절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연간 약 2만여명의 여자 태아들이 임신중절로 살해되고 있다고 함. 그결과 여아 100명당 남아 115명이 출생하는 성비불균형을 초래하였음.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이미경의원)

☞ (국무총리 답변) 정부는 성감별에 따른 임신중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의료법을 개정해서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금지했고 또 성감별행위를 한 의료인을 1회의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하였음.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성차별을 유발하는 사회제도와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법 등 관련법령도 개정한 바가 있음. 그러나 이 문제는 법적 제재에 앞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식전환과 의료인의 윤리관 확립이 중요하므로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의료단체의 자율적인 근절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함.

◆ 뿌리깊은 남성우월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직에 여성이 20%이상 차지하도록 할당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5,7급 공무원의 20% 채용목표에 만족해서는 안됨. 정부부터 솔선수범하여 공공기관의 임원과 국립대학의 교수임용에 할당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이미경의원)

☞ (국무총리 답변) 정부는 96년부터 5급 행정직, 외무직의 공개채용에 공무원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음. 그리고 2000년까지 여성채용목표율을 2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임.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직원채용시에는 여성고용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기업체의 대표들에게 여성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권유하고 있음.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점차 여성들이 주요정책결정직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노력하며,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인사원칙을 지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여성들의 고용조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시간제 여성노동자는 증가하여 시중은행의 경우 80년 45.9%이던 것이 93년에는 64.9%로 늘었음. 시간제 노동자는 거의 같은시간, 같은일을 하고도 정규직의 60%정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금융권에서는 新人事制度를 도입하여 여성을 저임금 단순직종에 묶어두고 있는데, 비정규직과 신인사제도에 대한 대책은?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6%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5인미만 사업장임.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勤勞基準法과 産災保險이 시급히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미경의원)

☞ (국무총리 답변) 정부는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도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중임. 그러나 적용확대에 앞서 소규모 영세사업주들의 부담능력과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문제 등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경영여건과 산업재해율 등의 차이를 고려해 일부 업종에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임.

☞(노동부장관 답변)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먼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해 일하는 여성의 집을 확충하고 여성훈련원생 비율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하고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의 취업장애요소를 해결하고 고용인센티브제를 공공부분부터 도입 실시하고 있음. 특히 근로중인 여성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91년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 30대그룹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을 심사해 시정조치한 바 있고 내년말까지 100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성차별적 요소를 과감히 시정토록 하겠음.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노사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보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한편, 우리 산업사회는 정보화의 촉진으로 일의 형태가 근원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時間制勤勞 등 새로운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에 대해 남녀를 불문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간 勞使關係改革委員會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형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임. 또한 신인사제도의 경우 금년 8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1,388개를 조사한 결과 코스별 고용관리제도의 실시업체는 27개이며 인사규정에 근거를 두고 노사합의 또는 근로자 자유의사에 의해 職群選擇과 職群轉換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직군전환을 허용하지 않아 여성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소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해 나가겠음. 정부는 새로운 고용형태와 관련해 여성에게 전적으로 불리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여성고용의 촉진은 물론 직업생활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만큼 이러한 고용형태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성근로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음.

◆ 김영삼대통령은 보육시설을 96년까지 3만4천개

소로 대폭 증설한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겨우 31%인 1만787개소를 증설하는데 그쳤음.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성차별이 여성들의 晩婚, 독신주의, 출산기피를 초래하여 인구성장률을 감소시키고 있음. 2세출산의 감소는 국가안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기반부터 흔드는 일이라 생각함. 모성보호 비용부담의 확실한 사회부담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함. 출산·육아휴가비용의 사회부담계획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미경의원)

☞ (국무총리 답변) 정부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기업의 여성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여성인력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고용보험에서 70인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육아휴직장려금제도를 98년까지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고용주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출산휴가기간 중의 급여를 사회보험 등 공공부문에서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음.

☞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96년6월말 현재 보육실태는 1만7천여개 시설에서 36만4천명의 아동이 보육받고 있고 이는 전체 보육대상 아동 65만명의 56%에 해당되는 규모로 아직 미흡한 실정임. 정부는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94년10월 8개부처가 참여하여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97년까지 정부재정 및 국민연금기금에서 총 1조3천억원을 투자해서 보육대상 아동의 95% 수준인 63만명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96년6월까지 3,812개의 보육시설이 새로이 설치되어 동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 정부는 앞으로 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방과후 아동보육 및 장애아·영아 보육실시,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등을 통해 질적 향상을 꾀하겠음.

◆ 91년 인터폴은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건수가 스웨덴,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함 피해자들의 연령도 낮아져 어린이 성폭력이 늘어나고 있음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성교육은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시급함. 현재의 성교육을 정규교과과정으로 채택하고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성폭력피해자를 위로하고 돌보기보다는 정조를 잃은 더럽혀진 여자로 경원시하는 잘못된 사고가 만연되고 있으며 법조인들조차 이러한 인식을 가져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법조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검찰과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이미경의원)

☞ (국무총리 답변) 정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고 범죄심리를 유발하는 저속한 대중매체와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중임. 그리고 어린이 성장단계에 알맞는 윤리적 심리적 차원의 인성교육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보호시설과 구제·치료제도도 대폭 확충하겠음. 또한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등 민간차원의 건전문화운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노력하겠음.

☞ (법무부장관 답변) 성폭력과 가정폭력사범의 단속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법조인 특히 수사에 종사하는 관계자가 그 실태와 원인, 대처방안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성폭력특별법 개정 및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는만큼 앞으로 검찰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과정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본질과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하고 연수원생들에 대해서도 실무수습에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지도해 나가겠음.

☞ (교육부장관 답변) 현재 각급 학교의 성교육은 가정, 윤리, 도덕, 생물, 과학, 양호, 체육 등 관련 여러교과목에서 실시하고 있음. 각급 학교와 시도 교육청 자료실에는 상당량의 성교육 관련책자, 비디오, 투시물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학교별 재량시간을 활용하여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음. 이제 성교육은 순결교육의 차원을 넘어 변화하는 성윤리와 사회적 성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현재 중등교육과정은 교과목수와 주당 시간수가 너무 많아 유사교과목을 통합하여 교과목수를 줄이는 교과과정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므로 성교육을 정규교과과정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며 성교육 전담교사도 같은 맥락에서 현재로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형편임. 그러나 시도 교육청별 성교육에 대한 교사연수를 일반연수로 바꿈으로써 모든 교사로 하여금 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성교육을 성폭력 예방과 함께 크게 강화하는 방침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음.

◆ 올해 UN인권위원회는 일본 정부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법적 배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한바 있으며 이제는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임.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증액시킨 것에는 고맙게 생각하나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취한 태도는 불만족스러움. 일본정부에게 성실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정부차원에서 UN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 이행을 일본정부에 촉구할 계획은 없는지? (이미경의원)

☞ (국무총리 답변) 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UN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한 사실들이 있음. 현재 일본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으로 피해자 개인에게 총리 사죄서한을 동봉해서 200엔의 일시금을 지급하고 정부출연예산으로 의료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임, 이에 우리정부는 반드시 우리 피해자와 관련단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음.

◆ 여성인력자원의 충분한 활용없는 선진화는 있을 수 없음. 여성들의 노동력을 사회가 건전하게 흡수하지 못한 결과 노동력의 손실뿐만 아니라 과소비나 사치풍조, 파행적 성윤리 등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됨. 남녀고용평등법이나 10대 중점추진과제와 같은 정부시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방안과 근로현장에서의 여성들에 대한 불평등을 보다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은 없는지? 그리고 여성들이 가족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몽교육을 시키고 여성의 遊休勞動力이 公益과 사회봉사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상현의원)

☞ (국무총리 답변) 정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고 세계화추진과제로 여성의 사회참여촉진 10대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좀더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식개혁에 국민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해 여성에 대한 존중과 성차별의식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음. 오늘날 지역사회의 발전과정에 스스로 참여 봉사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自願奉仕活動支援關聯法律의 제정을 추진중임.

여성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家庭暴力防止관련法律案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법률안(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안 3건과 가정폭력방지관련 법률안 4건)에 대하여 1996년 12월 6일 제181회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는 동년 12월 9일 7건의 법률안을 축조심사하여 3건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음. 이어 1996년 12월 12일 제3차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서를 수정없이 채택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해당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redacted]

1996年 10月 30日 申樂均・李海瓚・鄭喜卿・秋美愛・韓英愛・金한길・李聖宰・朴相千議員外 71人이 發議한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

[redacted]

律中改正法律案(이하 “國民會議案” 이라고 약칭함)과 1996年 11月 11日 權英子・林鎭出・吳陽順・金映宣議員 外 149人이 發議한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이하 “新韓國黨案” 이라고 약칭함) 및 1996年 11月 13日 鄭相千・趙鍾奭・咸錫宰議員 外 46人이 發議한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 改正法律案(이하 “自民聯案” 이라고 약칭함)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는 이를 심도있게 審査한바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을 制定, 施行한지 만 2年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적으로 近親間 및 未成年者 등에 대한 性暴力犯罪가 빈발하는 등 그 심각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어 性暴力犯罪의 處罰과 被害者 保護節次를 한층 강화하여 性暴力犯罪를 效果的으로 豫防・處罰하고 被害者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現行 法律의 改正이 必要하다는데에 認識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은 意見을 提示하기로 하였음.

[redacted]

1. 定義規定: 國民會議案 第2條
2.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規定: 國民會議案 第3條第1項 및 新韓國黨案 第3條第3項
3. 特殊强盜强姦등: 新韓國黨案 第5條
4. 特殊强姦등: 新韓國黨案 第6條
5. 親族關係에의한 强姦등: 新韓國黨案 第7條
6. 障碍人에 대한 準强姦등: 第8條를 다음과 같이 함
   第8條(障碍人에 대한 姦淫등) 障碍人福祉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에 대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 姦淫하거나 醜行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7. 13歲미만의 未成年者에 대한 强姦, 强制醜行등: 新韓國黨案 第8條의2
8. 强姦등 殺人・致死: 新韓國黨案 第10條
9. 業務등 關係로 인한 性的表現등: 新韓國黨案 第11條의2를 採擇하되 題名 및 內容一部 修正
   第11條의2(業務등 關係로 인한 性的 괴롭힘등)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性的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業務・고용 기타의 관계에 있는 者가 자기의 보호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性的표현이나 행동을 하여 性的 괴롭힘을 가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0. 未遂犯: 新韓國黨案 第12條
11. 告訴: 新韓國黨案 第15條
12. 保護觀察: 第16條의 題名을 “保護觀察등”으로 하고 第16條第2項중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수 있다”를 “保護觀察・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받을 것을 명할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併科할 수 있다”로 하고 同項但書의 “保護觀察”을 “保護觀察・社會奉仕 또는 受講”으로 하며 同條第4項중 “保護觀察에”를 “保護觀察・社會奉仕 및 受講에”로 한다
13. 保護監護: 新韓國黨案 第17條
14. 信賴關係에 있는 者 등의 同席: 新韓國黨案 第22條의 2
15. 申告義務: 新韓國黨案 第22條의 3
16. 證據保全의 特例: 國民會議案 第22條의 3
17. 被害者에 대한 救助: 國民會議案 第22條의 5
18. 相談所의 設置: 新韓國黨案 第23條
19. 保護施設의 設置: 新韓國黨案 및 國民會議案 第25條
20.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休止 또는 廢止: 新韓國黨案 및 國民會議案 第27條
21. 監督: 新韓國黨案 및 國民會議案 第28條
22. 醫療保護: 新韓國黨案 第33條
23. 權限의 위임: 新韓國黨案 및 國民會議案 第34條
24. 罰則: 新韓國黨案 第35條
25. 過怠料: 新韓國黨案 및 國民會議案 第36條
26. 兩罰規定: 新韓國黨案 第37條
27. 附則: 新韓國黨案 附則 第1項 및 國民會議案附則 第4項

[redacted]

1. 告訴期間: 國民會議案 第19條
2. 特定强力犯罪의 處罰에 관한 特別法의 準用: 新韓國黨案 第20條
3. 審理의 非公開: 自民聯案 第22條
4. 賠償命令의 申請에 관한 特例: 國民會議案 第22條의 4
5. 經費의 補助: 自民聯案 第30條

[redacted]

1. 性暴力豫防對策委員會: 國民會議案 第3條의 2

性暴力豫防對策委員會의 設置에 관하여 新韓國黨案은 機構의 新設에 따른 人力·豫算의 追加所要發生과 諮問機構로서의 實效性이 疑問시 되며 또한 國務總理室의 現行 女性政策審議委員會가 그 機能을 遂行할 수가 있기 때문에 別途의 機構신설이 不必要하다는 主張인 反面 國民會議는 現在 性暴力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여러부서에서 산발적으로 性暴力犯罪 관련업무를 수행하므로서 性暴力犯罪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설의 전담위원회가 필요하다는 主張임

2. 重强制醜行: 國民會議案 第11條의 2

加重處罰의 必要性은 認定되나 法條文上의 行爲樣態에 관한 法律的 用語整理가 必要

3. 裁定申請: 國民會議案 第22條의 2

裁定申請制度의 導入에 대하여 新韓國黨은 裁定申請制度는 國家訴追主義에 대한 중대한 例外로서 性暴力犯罪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려는 것은 衡平性面에서 문제가 있을수 있는点, 現行法上의 抗告·再抗告制度와 憲法裁判所에 대한 訴願까지 認定되고 있음에도 裁定申請까지 인정하는 것은 檢事의 不起訴處分에 대한 지나친 規制라는 点등에서 裁定申請制度의 導入은 곤란하다는 主張인 반면 國民會議는 性暴力犯罪被害者의 保護를 위하여 性暴力犯罪에도 擴大適用하여 刑事訴訟法上의 起訴獨占主義 및 起訴便宜主義에 대한 合理的인 견제수단으로 裁定申請制度의 導入이 필요하다는 主張임.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合意事項)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2條第1項 및 第2項을 第2項 및 第3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1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며, 同條第2項第1號중 "風俗을 해하는 罪중"을 "性風俗에 관한 罪중"으로 하고, 同項第2號중 "收受"를 각각 "授受"로 하며, 同項第3號중 "貞操에 관한 罪"를 "强姦과 醜行의 罪"로, "第299條(準强姦·準强制醜行)"을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으로, "第301條(强姦등에 依한 致死傷)"을 "第301條(强姦등 傷害·致傷)·第301條의2(强姦등 殺人·致死)"로, "第305條(未成年者에 對한 姦淫·醜行)"을 "第305條(未成年者에 대한 姦淫, 醜行)"으로 한다.

①이 法에서 "性暴力"이라 함은 사람의 性的 自由를 侵害하거나 性的 自由에 대한 危害를 造成하는 행위와 一般人이 가지고 있는 正常的 性的 羞恥心 또는 道德 感情을 害하는 행위를 말한다.

★ 第3條第1項중 "위하여"를 "위하여 性暴力犯罪 緊急申告電話 開設·운영등"으로 하고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에 대한 性敎育 및 性暴力豫防에 필요한 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5條第1項중 "第330條(夜間住居侵入窃盜) 또는 第331條(特殊窃盜)"를 "第330條(夜間住居侵入窃盜), 第331條(特殊窃盜) 또는 第342條(未遂犯. 다만, 第330條 및 第331條의 未遂犯에 한한다)"로, "第299條(準强姦·準强制醜行)"를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로, "死刑·無期"를 "無期"로 하고, 同條第2項중 "第334條(特殊强盜)"를 "第334條(特殊强盜) 또는 第342條(未遂犯. 다만, 第334條의 未遂犯에 한한다)"로, "第299條(準强姦·準强制醜行)"를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로 한다.

★ 第6條第3項중 "第299條(準强姦·準强制醜行)"를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로 한다.

★ 第7條第1項 및 第2項중 "尊屬등 年長의 親族이"를 각각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로 하고, 同條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刑法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犯한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親族의 범위는 4寸이내의 血族과 2寸이내의 姻戚으로 한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親族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親族을 포함한다.

★ 第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8條(障碍人에 대한 姦淫등) 障碍人福祉法 第2條의 規

定에 의한 障碍人에 대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 姦淫하거나 醜行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第8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8條의2(13歲미만의 未成年者에 대한 强姦, 强制醜行 등) ①13歲미만의 女子에 대하여 刑法 第297條(强姦)의 罪를 범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13歲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刑法 第298條(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13歲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刑法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犯한 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④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13歲미만의 女子를 姦淫하거나 13歲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醜行을 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 第10條第1項중 "第299條(準强姦·準强制醜行)"를 "第300條(未遂犯)"로 한다.

★ 第11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1條의2(業務등 關係로 인한 性的 괴롭힘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性的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目的으로 業務·고용 기타의 관계에 있는 者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性的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 성적 괴롭힘을 가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第12條중 "第11條"를 "第10條"로 한다.

★ 第15條중 "第12條(第11條의 未遂犯에 한한다)"를 "第11條의2"로 한다.

★ 第16條의 題目 "(保護觀察)"을 "(保護觀察등)"으로 하고, 同條第2項 本文중 "保護觀察을 명할 수 있다"를 "保護觀察·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받을 것을 명할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併科할 수 있다"로 하고, 同條同項 但書중 "保護觀察"을 "保護觀察·社會奉仕 또는 受講"으로 하며 同條第4項중 "保護觀察에"를 "保護觀察·社會奉仕 및 受講에"로 한다.

★ 第17條중 "第12條"를 "第10條 및 第12條"로 한다.

★ 第22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2條의2(信賴關係에 있는 者등의 同席)

①法院은 第5條 내지 第9條와 第11條 및 第12條(第10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의 犯罪의 被害者를 證人으로 訊問하는 경우에는 檢事 또는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被害者와 信賴關係에 있는 者를 同席하게 할 수 있다.

②搜査機關이 第1項의 被害者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被害者가 지정하는 者를 同席하게 할 수 있다.

★ 第22條의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2條의3(申告義務) 18歲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敎育 또는 治療하는 施設의 責任者 및 關聯 從事者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第5條 내지 第12條 및 刑法 第297條(强姦) 내지 第301條의2(强姦등 殺人·致死)의 犯罪의 被害者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搜査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 第22條의4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2條의4(證據保全의 特例)

①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被害者가 結婚 기타의 사유로 公判期日에 출석하여 證言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疏明하여 당해 性暴力犯罪를 搜査하는 檢事에 대하여 刑事訴訟法 第184條(證據保全의請求와그節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據保全의 請求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요청을 받은 檢事는 이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據保全의 請求를 하여야 한다.

★ 第22條의5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2條의5(被害者에 대한 救助) 被害者가 加害者의 不明 또는 無資力의 사유로 인하여 被害의 전부 또는 일부를 賠償받지 못하고 그 生計維持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被害者와 그 法定代理人은 犯罪被害者救助法에 의한 救助를 申請할 수 있다.

★ 第23條第2項중 "直轄市長"을 "廣域市長"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保健社會部令"을 "保健福祉部令"으로 한다.

★ 第25條第3項, 第27條중 "保健社會部令"을 "保健福祉部令"으로 한다.

★ 第28條第1項중 "保健社會部長官"을 "保健福祉部長官"으로 한다.

★ 第33條第1項중 "保健社會部長官"을 "保健福祉部長官"으로, "保健所를"을 "保健所중에서"로, "專擔醫療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專擔醫療機關을 지정하여 性暴力被害者가 적정한 治療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 第34條중 "保健社會部長官"을 "保健福祉部長官"으로 한다.

★ 第35條중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을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으로 하고, 同條 第2號를 第4號로 하며, 同條 第3號중 "第31條"를 "第21條 또는 第31條"로 하고, 同條에 第2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 第4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被害者를 해고하거나 기타 不利益을 준 者

★ 第36條第2項 내지 第4項중 "保健社會部長官"을 각각

"保健福祉部長官"으로 한다.

★ 第37條중 "第33條"를 "第35條"로 한다.

附 則

①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被害者에 대한 救助에 관한 經過措置)

第22條의5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행하여진 犯罪行爲에 의한 死亡 또는 重障碍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redacted]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가정폭력방지관련 법률안들을 심의한 결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2개의 법률로 제정하는데 합의하였음.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의견서는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는 보건복지위원회로 제출하였음

1996年 10月 30日 申樂均·李海瓚·鄭喜卿·韓英愛·金한길·李聖宰議員外 72人이 發議한 家庭暴力防止法案(이하 "國民會議案"이라 약칭함)과 1996年 11月 22日 林鎭出·權英子·吳陽順·金映宣議員外 149人이 發議한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案(이하 "新韓國黨案"이라 약칭함) 및 1996年 11月 28日 咸錫宰議員外 48人이 發議한 家庭暴力防止法案(이하 "自民聯案"이라 약칭함)을 審査함에 있어 이상 3件의 交涉團體案을 중심으로 新韓國黨이 別途 提出한 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案(이하 "保護法案"이라 약칭함)과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家庭暴力防止法 制定請願(이하 "請願案"이라 약칭함)을 參考하여 심도있게 審査한바 家庭暴力은 그동안 우리社會의 家父長的 儒敎理念의 영향아래 家庭內의 문제로만 치부되어 國家나 社會가 公的으로 介入하기를 망설여 왔으며 이러한 慣行과 核家族化 등으로 말미암아 최근 우리社會는 전통적인 家族制度의 틀이 와해되어 道德과 倫理에 바탕을 둔 家庭自治가 法의 규제대상으로 대두되게 되었음.

이러한 家庭暴力은 다른 社會的 暴力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可能性이 높고 그 수단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므로써 家庭의 破壞내지는 解體 또는 暴力을 社會的으로 學習시키는 逆作用을 招來하게 됨으로써 이제 家庭暴力은 더 이상 家庭만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될 人權保護次元에서의 社會的 暴力으로 國家와 社會가 신속하게 介入하여 家庭暴力을 豫防하고 再發을 防止함으로서 건전한 家庭을 保護·育成하기 위한 特例法 制定의 必要性에 대하여 認識을 같이 하였으며 特別法의 體系에 있어서도 家庭暴力問題를 상담하고 家庭暴力被害者를 保護하기 위한 施設의 설치·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事項과 이에 관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등을 정한 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법률안의 內容과 家庭暴力犯罪에 대한 刑事處罰의 特例 등을 規

定한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案은 그 規律對象. 規律內容 및 法執行機關을 각각 달리 함으로써 두가지 내용을 하나의 法體系에 담는 경우 현실적으로 家庭暴力被害者의 保護에 관한 規定들이 處罰에 관한 規定들에 묻혀서 關心이 적어지거나 實效性이 없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各各의 立法을 하기로 合意하였음.

制定法律案의 具體的 內容에 관한 意見은 다음과 같음.

◆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案의 심사결과

[redacted]

[redacted]

[redacted]退去命令(國民會議案 第12條), 準用 및 委任規定(國民會議案 第24條), 被害者 등의 權利(國民會議案 第29條 및 自民聯案 第22條), 告訴 등의 取消(國民會議案 第30條), 誣告罪(國民會議案 第62條), 特殊職務遺棄(國民會議案 第63條)

[redacted]

- 家庭保護事件의 관할, 決定의 執行, 保護處分의 變更, 保護處分의 終了, 費用의 負擔, 抗告, 抗告狀의 제출, 抗告의 裁判, 執行의 停止, 再抗告, 附則.

◆ 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案의 심사결과

1996年 11月 22日 林鎭出·權英子·吳陽順·金映宣議員外 149人이 發議한 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案(이하"新韓國黨案"이라 약칭함)을 審査함에 있어 本法律案과 1996年 10月 30日 申樂均·李海瓚·鄭喜卿·秋美愛·韓英愛·金한길·李聖宰議員外 72人이 發議한 家庭暴力防止法案(이하 "國民會議案"이라 약칭함) 및 1996年 11月 28日 咸錫宰議員外 48人이 發議한 家庭暴力防止法案(이하"自民聯案"이라 약칭함)을 中心으로,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家庭暴力防止法 制定 請願(이하"請願案"이라 약칭함)을 參考하여 심도있게 審査한 결과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을 制定하는데 合意하였으며, 制定法律案의 具體的 內容에 관한 意見은 다음과 같음

[redacted]

- 類似名稱使用禁止

[redacted]

[redacted]附則(施行日)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案 (여성특위의 합의안)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신한국당안(제1조) 채택

이 法은 家庭暴力犯罪에 대한 刑事處罰節次에 관한 特例를 정하고 家庭暴力犯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 環境調整과 性行矯正을 위한 保護處分을 행함으로써 家庭暴力犯罪로 파괴된 家庭의 平和와 安定의 회복을 촉진하며 나아가 個人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한 건강한 家庭을 육성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범죄": 신한국당안(제2조제1호)에 자민련안(

제2조제1호)중 일부추가

1. “家庭暴力犯罪”라 함은 家庭構成員사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被害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

가. 刑法 第2編 第25章 傷害와 暴行의 罪중 第257條(傷害, 尊屬傷害) 第1項·第2項, 第258條(重傷害, 尊屬重傷害), 第260條(暴行, 尊屬暴行)第1項·第2項, 第261條(特殊暴行) 및 第264條(常習犯)의 罪

나. 刑法 第2編 第28章 遺棄와 虐待의 罪중 第271條(遺棄, 尊屬遺棄)第1項·第2項, 第272條(영아遺棄), 第273條(虐待, 尊屬虐待) 및 第274條(兒童酷使)의 罪

다. 刑法 第2編 第29章 逮捕와 監禁의 罪중 第276條(逮捕, 監禁, 尊屬逮捕, 尊屬監禁), 第277條(重逮捕, 重監禁, 尊屬重逮捕, 尊屬重監禁), 第278條(特殊逮捕, 特殊監禁), 第279條(常習犯) 및 第280條(未遂犯)의 罪

라. 刑法 第2編 第30章 脅迫의 罪중 第283條(脅迫, 尊屬脅迫) 第1項·第2項, 第284條(特殊脅迫), 第285條(常習犯) 및 第286條(未遂犯)의 罪

마. 刑法 第2編 第33章 名譽에 關한 罪중 第307條(名譽毁損), 第308條(死者의 名譽毁損), 第309條(出版物등에 의한 名譽毁損) 및 第311條(侮辱)의 罪

바. 刑法 第2編 第37章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중 第324條(强要)의 罪

사. 刑法 第350條(恐喝)의 罪

아. 刑法 第366條(財物損壞)의 罪

자. 가目 내지 바目의 罪로서 다른 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되는 罪

“가정구성원”: 각 교섭단체의 안을 종합.수정함

2. “家庭構成員”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者를 말한다

가. 配偶者(사실혼관계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配偶者와 直系尊卑屬관계에 있는 자

다. 기타 동거하는 親族관계에 있는 者

(의견: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계부모자, 적모서자 관계에 있는 자를 추가하자는 다수의견과 이를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음)

“가정폭력행위자”: 신한국당안(제2조제3호) 채택

3. “家庭暴力行爲者”라 함은 家庭暴力犯罪를 행한 者를 말한다

“피해자”: 국민회의안(제2조제4호) 채택

4. “被害者”라 함은 家庭暴力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被害를 입은 者를 말한다

“가정보호사건”: 신한국당안(제2조제4호) 채택

5. “家庭保護事件”이라 함은 家庭暴力犯罪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保護處分을 행하는 事件을 말한다

第3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 신한국당안(제3조) 채택

家庭暴力犯罪에 대하여는 이 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家庭暴力行爲者가 婚姻(事實婚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20歲미만의 者인 경우에는 少年法을 적용한다

第2章 刑事事件

第4條(申告義務등): 자민련안(제4조제1항,제3,4항) 및 청원안(제5조제2항) 채택

① 家庭暴力事件을 알게 된 者는 누구든지 이를 搜査機關에 申告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의 피해사례를 알게 된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한 교원 및 교육기관의 대표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대표

③ 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에 따른 相談所, 兒童福祉法에 따른 兒童相談所,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에 따른 性暴力被害相談所 등에 勤務하는 相談員 및 그 代表者는 內談者가 同意할 경우 이를 搜査機關에 申告할 수 있다.

④ 家庭暴力事件의 申告者는 申告行爲와 관련하여 어떠한 不利益도 받지 않는다.

第5條(진행중인 가정폭력에 대한 措置): 국민회의안(제11조) 채택

① 진행중인 家庭暴力에 관한 告訴 또는 申告를 받은 司法警察官吏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사태를 파악한 후 다음 各號의 措置중에서 가장 적절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1. 行爲者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警告를 발하는 것
2. 行爲者의 暴力行爲를 制止하는 것
3. 治療가 필요한 被害者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醫療機關에 移送하는 것
4. 被害者 또는 行爲者를 제외한 家族들을 가장 가까운 家庭暴力被害相談所 또는 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 移送하는 것
5. 기타 家庭暴力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措置를 취하는 것

② 司法警察官吏는 第1項의 措置에 불구하고 行爲者의 暴力行爲를 制止할 수 없고 그 행위로 인하여 他人의 人命·身體에 危害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行爲者를 체포하여 警察官署에 保護留置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留置는 24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 퇴거명령(국민회의안 제12조)은 삭제하기로 합의함**

第6條(家庭保護事件의 告訴): 국민회의안(제8조제1항-

제4항) 일부 수정채택

①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行爲者에 대하여 家庭保護事件으로 처리해 줄 것을 바라고 行爲者를 司法警察官吏에게 告訴할 수 있다

②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行爲者가 자기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인 경우에도 告訴할 수 있다

③ 被害者의 法定代理人이 공동하여 被害者에 대하여 家庭暴力을 행한 때에는 被害者의 親族이 告訴할 수 있다

④ 被害者에게 告訴할 法定代理人이나 親族이 없는 때에는 利害關係人이 檢事에게 告訴할 수 있는 者의 지정을 請求할 수 있다. 檢事는 請求가 있는 날부터 30日이내에 告訴할 수 있는 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第7條(家庭保護事件의 처리): 국민회의안(제7조제1항, 제2항) 채택 및 제3항 신설

① 家庭暴力을 행한 者에 대하여 被害者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告訴權者가 家庭保護事件으로의 처리를 바라고 告訴하는 때에 이를 일반 刑事事件의 예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法에 의한 家庭保護事件으로 처리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刑事事件의 예에 의한다

1. 被害者가 行爲者를 告訴 또는 申告하면서 刑事處罰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

2. 擔當判事가 家庭保護事件을 調査 또는 審理한 결과 제37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사유가 있어서 刑事處分을 과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

③ 檢事는 第2條第1項 各目에 규정된 罪에 대한 事件이 **피해자의 의사, 사건의 경중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事件을 관할 家庭法院 또는 家庭法院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第8條(家庭保護事件으로 送致時의 身柄處理): 신한국당안(제8조) 채택

① 第7條第3項에 의한 送致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家庭暴力行爲者를 拘禁하고 있는 시설의 長은 檢事의 送致指揮를 받은 때부터 家庭法院 또는 家庭法院支院의 合議部가 있는 市(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郡에서는 24時間이내에, 기타 市·郡에서는 48時間이내에 家庭暴力行爲者를 관할 家庭法院 또는 家庭法院支院에 引渡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와 결정은 拘束令狀의 효력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第9條(保護處分의 效力): 신한국당안(제9조) 채택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을 받은 家庭暴力行爲者에 대하여는 그 審理決定된 事件은 다시 公訴를 제기하거나 家庭保護事件으로 送致할 수 없다.

第10條(公訴時效의 停止): 신한국당안(제10조), 자민련안(제48조) 채택

家庭暴力犯罪에 대한 公訴時效는 당해 家庭保護事件이 法院에 계속중인 기간동안 그 진행이 정지된다

第11條(審理의 非公開): 신한국당안(제11조) 채택

① 家庭暴力犯罪에 대한 審理는 被害者의 私生活보호나 家庭의 平和와 安定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으로써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證人으로 召喚된 被害者와 家庭 構成員은 被害者의 私生活保護나 家庭의 平和와 安定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法院에 證人訊問의 非公開를 申請할 수 있다

第12條(報道禁止): 신한국당안(제12조), 자민련안(제50조) 채택

搜査중 또는 法院에 係屬중인 家庭暴力犯罪 또는 有罪의 判決이 확정된 家庭暴力犯罪에 관하여는 姓名· 年齡·職業·容貌등에 의하여 家庭暴力行爲者 및 被害者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新聞·雜誌·기타 出版物에 게재하거나 放送할 수 없다

第3章 家庭保護事件

第1節 通 則

第13條(管轄): 관할은 신한국당안(제13조)과 국민회의안(제6조)의 두개안이 합의가 안됨

第14條(搜査의 特例등): 국민회의안(제10조) 일부 수정채택

① 家庭保護事件으로 告訴 또는 申告되어 家庭暴力을 搜査하는 司法警察官吏는 刑事訴訟法 第19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檢事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搜査할 수 있다. 다만, 檢事에게는 搜査에 착수한 후 지체없이 搜査하는 事件이 家庭保護事件임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家庭保護事件의 搜査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③ 家庭保護事件의 告訴 또는 申告를 받은 司法警察官吏는 被害者가 行爲者에 대하여 刑事處罰 또는 보호처분을 희망하는지 與否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司法警察官吏는 家庭保護事件의 告訴 또는 申告를 받은 때로부터 30日 이내에 搜査를 종결하여 事件을 擔當判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이경우 檢事에게는 동시에 送致報告를 하여야 한다

第15條(送致書): 신한국당안(제14조) 채택

家庭保護事件을 送致하는 경우에는 送致書에 家庭暴力行爲者의 姓名·住居·生年月日·職業· 被害者와의 관계, 행위의 槪要와 家庭狀況을 기재하고 搜査機關의 搜査記錄, 裁判記錄 기타 參考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16條(移送): 신한국당안(제15조)와 국민회의안(제

14조)은 앞의 '관할'이 정해짐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합의가 안됨

第2節 調査와 審理

*** 제17조에서 제36조까지는 모두 신한국당안(제16조-제35조) 채택**

第17條(調査·審理의 方針)

家庭保護事件의 調査와 審理에 있어 醫學·心理學·社會學·社會福祉學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家庭暴力行爲者·被害者 및 家庭構成員의 性行·經歷·家庭狀況 등을 究明하고 家庭暴力犯罪의 動機·原因 및 實態등을 밝혀서 이 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18條(家庭保護事件調査官)

① 家庭法院 및 家庭法院支院에는 家庭保護事件調査官을 둔다

② 家庭保護事件調査官은 **裁判長**의 명을 받아 사실을 調査한다(재판장은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에 따라 재판장 또는 담당판사가 될 수 있음)

第19條(調査命令)

裁判長은 家庭保護事件調査官에게 家庭暴力行爲者·被害者 및 家庭構成員을 審問하거나 家庭暴力犯罪의 動機·原因 및 實態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실의 調査를 명할 수 있다(재판장은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에 따라 재판장 또는 담당판사가 될 수 있음)

第20條(專門家에 대한 意見照會)

① 家庭法院은 精神科醫師·心理學者·社會學者 기타 專門家에게 家庭暴力行爲者·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에 대한 診斷所見이나 心理狀態 및 家庭暴力犯罪의 원인등에 관한 의견을 照會할 수 있다

② 家庭法院은 家庭保護事件을 調査 또는 審理함에 있어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照會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第21條(陳述拒否權의 告知)

家庭法院 또는 家庭保護事件調査官이 犯罪事實에 관하여 家庭暴力行爲者를 調査할 때에는 미리 家庭暴力行爲者에 대하여 불리한 陳述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第22條(召喚 및 同行令狀)

① 家庭法院은 調査 또는 審理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期日을 지정하여 家庭暴力行爲者·被害者·家庭構成員 기타 參考人을 召喚할 수 있다

② **裁判長**은 家庭暴力行爲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同行令狀을 발부할 수 있다(재판장은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에 따라 재판장 또는 담당판사가 될 수 있음)

第23條(緊急同行令狀)

家庭暴力行爲者가 召喚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被害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없이 同行令狀을 발부할 수 있다

第24條(同行令狀의 方式)

同行令狀에는 家庭暴力行爲者의 姓名·生年月日·住居, 행위의 槪要, 引致 또는 收容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경과후에는 執行에 착수하지 못하며 令狀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發付年月日을 기재하고 **裁判長**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재판장은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에 따라 재판장 또는 담당판사가 될 수 있음)

第25條(同行令狀의 執行)

① 同行令狀은 家庭保護事件調査官이 執行한다

② **裁判長**은 家庭法院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法院主事·法院主事補 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同行令狀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재판장은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에 따라 재판장 또는 담당판사가 될 수 있음)

第26條(補助人)

① 家庭暴力行爲者 또는 家庭暴力行爲者와 刑事訴訟法 第30條第2項의 관계에 있는 者는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

② 補助人은 辯護士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家庭法院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辯護士가 아닌 者를 補助人으로 選任함을 許可할 수 있다

③ 家庭法院은 家庭暴力行爲者가 刑事訴訟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辯護士를 家庭暴力行爲者의 補助人으로 選任하여야 한다

第27條(臨時措置)

① 家庭法院은 事件의 調査와 審理 또는 被害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臨時措置를 할 수 있다

1. 家庭暴力行爲者를 被害者 또는 家庭構成員으로부터 別居하도록 함으로써 家庭暴力行爲者를 被害者와 隔離시키는 것
2. 家庭暴力行爲者를 醫療機關 기타 療養所에 委託하는 것
3. 家庭暴力行爲者를 拘置所에 留置하는 것

② 同行令狀에 의하여 同行된 家庭暴力行爲者 또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引渡된 家庭暴力行爲者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措置가 필요한 때에는 도착한 때로부터 24時間내에 그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 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의 臨時措置를 한 때에는 補助人이 있는 경우에는 補助人에게, 補助人이 없는 경우에는 家庭構成員중에서 家庭暴力行爲者가 지정하는 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第1項第1號의 隔離期間은 3月을, 같은項第2號의 委託期間과 같은項第3號의 留置期間은 1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決定으로써 1回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 第1項第2號의 措置를 할 때에는 家庭暴力行爲者의 監護에 필요한 사항을 부가하거나 受託者에게 이를 指示할 수 있다

⑥ 家庭法院은 第1項의 決定을 한 때에는 家庭保護事件調査官, 家庭法院 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法院主事補, 矯導所 또는 拘置所 소속 公務員이나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그 決定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⑦ 第1項의 措置는 언제든지 職權 또는 家庭暴力行爲者, 그 法定代理人이나 補助人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써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⑧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 및 療養所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28條(審理不開始의 決定)

① 家庭法院은 送致書와 家庭保護事件調査官의 調査報告書에 의하여 事件의 審理를 開始할 수 없거나 開始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審理를 開始하지 아니한다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被害者의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거나 被害者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는 家庭暴力犯罪만을 대상으로 하는 家庭保護事件에 대하여 被害者의 告訴가 取消되거나 被害者가 處罰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意思表示를 한 때에도 같다

② 家庭法院이 第1項 後段의 경우나 事件이 輕微하다는 이유로 審理를 開始하지 아니한다는 決定을 한 때에는 被害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審理不開始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措置는 取消된 것으로 본다

④ 家庭暴力行爲者의 所在不明을 이유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理不開始의 決定을 할 때에는 警察廳長에게 家庭暴力行爲者에 대한 指名手配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家庭法院은 家庭暴力行爲者의 所在不明을 이유로 審理不開始의 決定을 받은 家庭暴力行爲者의 所在가 밝혀진 때에는 지체없이 그 審理不開始의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第29條(審理開始의 決定)

① 家庭法院은 送致書와 家庭保護事件調査官의 調査報告書에 의하여 事件의 審理를 開始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審理開始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 家庭法院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理決定을 한 때에는 家庭暴力行爲者와 被害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家庭暴力行爲者에 대하여는 審理에 붙여진 사유의 要旨 및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

第30條(審理期日의 指定)

家庭法院은 審理期日을 지정하고 家庭暴力行爲者를 召喚하여야 한다. 이 경우 被害者와 補助人(補助人이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審理期日을 통지하여야 한다

第31條(審理期日의 變更)

家庭法院은 職權 또는 家庭暴力行爲者나 補助人의 請求에 의하여 審理期日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期日을 家庭暴力行爲者·補助人 및 被害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32條(審理의 非公開)

審理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裁判長**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在席을 許可할 수 있다 (재판장은 관할에 따라 재판장 또는 담당판사가 될 수 있음)

第33條(意見陳述)

① 被害者·家庭保護事件調査官 및 補助人은 審理期日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裁判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家庭暴力行爲者의 退席을 명할 수 있다(재판장은 관할에 따라 재판장 또는 담당판사가 될 수 있음)

第34條(證人訊問·鑑定·通譯·飜譯)

① 家庭法院은 證人을 訊問하고 鑑定·通譯 또는 飜譯을 명할 수 있다.

② 刑事訴訟法중 法院의 證人訊問과 鑑定·通譯 및 飜譯에 관한 規定은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5條(檢證·押收·搜索)

① 家庭法院은 檢證·押收 또는 搜索을 할 수 있다.

② 刑事訴訟法중 法院의 檢證·押收 및 搜索에 관한 規定은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6條(協助·援助)

① 家庭法院은 그 職務에 관하여 모든 行政機關, 家庭暴力相談所등 또는 醫療機關 기타 公私團體에 대하여 필요한 援助와 協力을 요구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第37條(不處分의 決定): 국민회의안(제27조) 채택

① **擔當判事**는 事件을 審理한 결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被害者가 事件의 審理開始決定 이후에 告訴를 取消한 때
2.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 事件의 動機와 결과, 罪質과 行爲者의 性行·習癖등에

비추어 禁錮 이상의 刑事處分을 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

② **擔當判事**는 告訴의 取消에도 불구하고 第1項第3號의 사유에 의하여 불처분결정을 한 때에는 동시에 결정으로써 事件을 관할 地方法院에 대응하는 당해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담당판사는 관할에 따라 담당판사 또는 재판장이 될 수 있음)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件을 送致받은 檢事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事件에 관하여 公訴를 제기하여야 한다

第38條(記錄의 作成): 신한국당안(제38조) 채택

① 家庭法院 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는 家庭保護事件의 調査 및 審理에 대한 記錄을 작성하여 調査 및 審理의 내용과 모든 決定을 명확히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調査記錄에는 家庭保護事件調査官 및 家庭法院 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가, 審理記錄에는 裁判長 및 家庭法院 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39條(調査·審理와 處分의 期間): 신한국당안(제39조) 채택

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와 處分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送致받은 때로부터 3月이내에 마쳐야 한다

***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국민회의안 제29조, 자민련안 제22조), '고소 등의 취소'(국민회의안 제30조)는 삭제하기로 합의됨**

第40條(準用規定): 신한국당안(제40조) 채택

① 同行令狀이나 臨時措置의 執行節次에 관하여 이 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家庭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刑事訴訟法을 準用한다

② 證人·鑑定人·通譯人 및 飜譯人에게 지급하는 費用·宿泊料 기타 費用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중 費用에 관한 規定 및 刑事訴訟費用法을 準用한다

③ 第2項의 規定은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補助人에게 지급하는 費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1條(委任規定): 신한국당안(제41조) 채택

家庭保護事件의 調査·審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3節 保 護 處 分

第42條(保護處分의 종류와 내용): 국민회의안(제31조) 채택

① 保護處分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接近禁止命令: 行爲者를 被害者 住居에의 出入·同居·對面·通信 기타 이에 상당한 접근을 금하는 것
2. 養育禁止命令: 被害者가 未成年인 때에 行爲者로 하여금 그 養育을 금하는 것
3. 處分禁止命令: 行爲者 所有의 不動産등 일체의 財産에 대한 浪費를 제한하고 그 처분을 금하는 것
4. 引渡命令: 行爲者의 者로서 行爲者가 억류하고 있는 未成年의 被害者를 다른 配偶者나 第3者 또는 적당한 施設로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것
5. 損害賠償命令: 被害者에 대하여 治療費 및 慰藉料의 지급을 명하는것
6. 扶養費支給命令: 行爲者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被害者 및 家族들에 대한 상당한 扶養料의 지급을 명하는 것
7. 相談·治療命令: 行爲者를 家庭暴力被害相談所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機關으로부터 相談 또는 受講하도록 명하는 것
8. 監置·治療命令: 行爲者를 大統領令으로 지정하는 受託機關·醫療機關등에 委託하여 監置 또는 治療하도록 명하는 것
9. 社會奉仕命令: 行爲者를 社會福祉事業法이 정한 社會福祉施設 또는 大統領令으로 지정하는 施設에서 奉仕的 勞務에 종사하도록 명하는 것
10. 保護觀察命令: 行爲者로 하여금 정상적인 家庭 및 社會生活狀態하에서 그 동태를 관찰하도록 명하는 것

(의견: 가정보호처분중 양육금지, 처분금지, 인도, 손해배상, 부양료지급명령 등은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이며, 가정보호처분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가정보호사건에서 민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

第43條(보호처분의 결정): 국민회의안(제33조) 채택

① **擔當判事**는 審理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被害者의 의견 또는 請求를 참작하여 결정으로 第42條에 정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담당판사는 관할의 결정에 따라 담당판사 또는 가정법원이 될 수 있음)

② 보호처분은 2이상 병합하여 할 수 있다

③ 보호처분중 損害賠償命令·扶養料支給命令에는 民事訴訟法 第199條에 정한 假執行을 許可할 수 있다

④ 第42條第1項第7號 내지 10號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行爲者의 矯正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受託者 또는 그 처분을 집행하는 者에게 송부할 수 있다

第44條(家庭保護處分의 기간): 자민련안(제25조) 채택

第42條의 家庭保護處分의 期間은 6月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명령은 100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第45條(沒收): 신한국당안(제44조) 채택

家庭法院은 保護處分을 하는 경우에는 決定으로써 家庭暴力犯罪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物件으로서 家庭暴力行

爲者외의 者의 所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物件을 沒收할 수 있다

第46條(決定의 執行): 교섭단체간에 합의가 안됨

第47條(報告와 意見提出): 신한국당안(제46조) 채택
家庭法院은 第42條第1項第8號, 제10號의 保護處分을 決定한 때에는 保護觀察官 또는 受託者에 대하여 家庭暴力行爲者에 관한 報告書 또는 意見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執行과 관련된 사항을 指示할 수 있다

第48條(保護處分의 執行 등에 관한 被害者의 意見提出權):신한국당안(제47조) 채택
被害者는 언제든지 保護處分을 한 家庭法院이나 受託者 기타 保護處分을 집행하는 자에 대하여 保護處分의 執行狀況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第49條(保護處分의 變更): 교섭단체간에 합의가 안됨

第50條(保護處分의 終了): 교섭단체간에 합의가 안됨

第51條(費用의 負擔): 교섭단체간에 합의가 안됨

第4節 抗告와 再抗告

第52條(抗告): 교섭단체간에 합의가 안됨

第53條(抗告狀의 제출): 교섭단체간에 합의가 안됨

第54條(抗告의 裁判): 교섭단체간에 합의가 안됨

第55條(執行의 停止): 교섭단체간에 합의가 안됨

第56條(再抗告): 교섭단체간에 합의가 안됨

第57條(報道禁止의 準用): 신한국당안(제56조) 채택
第12條의 規定은 家庭保護事件에 관하여도 이를 準用한다

第 4 障 罰 則

第58條(保護處分不履行罪): 신한국당안(제57조) 채택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의 決定 또는 保護處分變更의 決定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執行에 응하지 아니한 家庭暴力行爲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1千萬원이하의 罰金 또는 拘留에 處한다.

第59條(報道禁止違反罪): 신한국당안(제58조) 채택
第12條 또는 第48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新聞에 있어서는 編輯人과 發行人, 기타 出版物에 있어서는 著作者와 發行者, 放送에 있어서는 放送編輯人과 放送人을 1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60條(過怠料): 신한국당안(제59조) 일부 수정채택
정당한 사유없이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에 불응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 '무고죄'(국민회의안 제62조), '특수직무유기'(국민회의안 제63조)는 삭제하기로 합의됨**

附 則

第1條(施行日): 교섭단체간에 의견일치가 안됨

第2條(經過措置): 신한국당안(부칙 제2조제1항), 국민회의안(부칙 제2조), 자민련안(부칙 제3조) 채택
① 이 法은 이 법 施行전에 행하여진 家庭暴力犯罪에 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한국당안(부칙 제2조제2항)은 합의가 안됨**
② 이 法 施行당시 家庭法院 또는 家庭法院支院이 설치되지 아니한 地域에 있어서의 이 法에서 家庭法院의 權限에 속하는 事件은 家庭法院 또는 家庭法院支院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地方法院 및 地方法院支院이 이를 관할한다.

*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등에 *관한法律案*(여성특위의 합의안)

*** 이하의 국민회의안은 새정치국민회의의 '가정폭력방지법'안을, 자민련안은 자유민주연합의 '가정폭력방지법안'을 말함**

第1條(目的): 신한국당안(제1조) 채택
이 法은 家庭暴力相談所 및 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등의 設置·運營을 통하여 家庭暴力을 豫防하고 家庭暴力의 被害者를 保護함으로써 個人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한 건강한 家庭의 육성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신한국당안(제2조) 채택
이 法에서 "家庭暴力"이라 함은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 관한特例法 第2條第1號에 規定된 犯罪를 포함한 家庭 構成員사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被害를 야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第3條(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신한국당안(제3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을 豫防하고 家庭暴力의 被害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를 保護하며, 個人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한 건강한 家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여야 하고 필요한 財源을 調達하도록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의 예방과 방지, 被害者의 보호를 主된 業務로 하여 설립·운영되는 民間의 家庭暴力相談所, 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 및 醫療施設 등에 대하여 補助金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家庭暴力의 실태에 관한 調査·硏究와 그 對策의 수립을 총괄하는 機構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할 機構의 명칭·조직·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단,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국민회의안(제4조), 자민련안(제3조), 청원안(제2조)의 내용을 가급적 반영토록 하기로 함)

第4條(相談所의 設置): 신한국당안(제4조) 채택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相談所(이하 "相談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相談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相談所의 시설·장비 및 相談所에 둘 相談員의 資格과 數등 相談所의 設置基準과 申告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5條(相談所의 業務): 신한국당안(제5조) 채택

相談所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1. 家庭暴力被害를 申告받거나 이에 관한 相談에 응하는 일

2. 家庭暴力被害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被害者를 일시 보호하거나 醫療機關 또는 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 데려다 주는 일

3. 家庭暴力의 처리에 관하여 大韓法律救助公團·大韓辯護士協會 및 地方辯護士會 기타 關係機關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家庭暴力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敎育·弘報를 하는 일

5. 기타 家庭暴力 및 家庭暴力被害에 관하여 調査·硏究하는 일

第6條(保護施設의 設置): 신한국당안(제6조) 채택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이하"保護施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은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保護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保護施設의 시설·장비 및 保護施設에 두는 專門要員의 資格과 數 등 保護施設의 설치기준과 許可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7條(保護施設의 業務): 신한국당안(제7조) 채택하되 동조 제3호를 수정함

保護施設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1. 第5條 各號의 일

2. 宿食을 제공하는 등 被害者를 일시보호하는 일

3. 被害者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家庭復歸 및 **사회적 자립**을 돕는 일

4. 기타 被害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第8條(被害者 意思의 尊重義務): 신한국당안(제8조) 채택

相談所나 保護施設의 長은 被害者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被害者를 일시보호하거나 宿食保護할 수 없다

第9條(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休止 또는 廢止): 신한국당안(제9조) 채택

第4條第2項 또는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0條(監督): 신한국당안(제10조), 국민회의안(제50조) 채택

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상담소 또는 保護施設의 長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1條(許可의 取消등): 신한국당안(제11조) 채택

市·道知事는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業務의 정지 또는 廢止를 명하거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第4條第3項 또는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3. 相談所나 保護施設을 營利의 目的으로 운영한 때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第12條(經費의 補助): 신한국당안(제12조) 채택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4條第2項 또는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第13條(營利目的運營의 禁止): 신한국당안(제13조) 채택

相談所나 保護施設은 營利를 目的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4條(相談所의 통합·設置 및 운영): 국민회의안(제53조) 채택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에 의하여 設置·운영하는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第23條 第1項의 性暴力被害相談所 또는 同法 第25條 第1項의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과 통합하여 設置·운영할 수 있다.

第15條(秘密嚴守의 義務): 신한국당안(제14조) 채택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이나 이를 보조하는 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類似名稱 使用禁止(신한국당안 제15조, 국민회의안 제55조, 자민련안 제45조)는 삭제하기로 합의됨**

第16條(醫療保護): 신한국당안(제16조) 채택

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國·公立病院 또는 保健所중에서 被害者의 治療를 위한 專擔醫療機關을 지정하여 被害者가 적정한 治療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專擔醫療機關은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醫療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被害者의 保健相談 및 지도
2. 家庭暴力被害의 治療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治療

③ 第2項의 경우에 그에 필요한 일체의 費用은 家庭暴力을 행한 者가 부담한다. 다만, 家庭暴力을 행한 者가 費用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를 부담하도록 한다.

④ 第3項의 費用의 計算·請求 및 지급절차 기타 家庭暴力을 행한 者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措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17條(權限의 委任): 신한국당안(제17조) 채택

保健福祉部長官과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18條(罰則): 신한국당안(제18조) 채택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相談所를 설치·운영하거나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保護施設을 설치·운영한 자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業務의 정지 또는 廢止命令을 받고도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계속 운영한 者
3.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相談所나 保護施設을 설치·운영한 자
4.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秘密嚴守義務를 위반한 者

第19條(兩罰規定): 신한국당안(제19조) 채택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1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같은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20條(過怠料): 신한국당안(제20조) 채택하되 제1항 제2호는 삭제

① 정당한 사유없이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30日이내에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①(施行日): 교섭단체간에 의견일치가 안됨

신한국당안: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국민회의안: 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민련안: 이 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②(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機構設置의 期限): 신한국당안(부칙제2항) 채택

國家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내에 第3條第3項에서 규정한 機構를 설치하여야 한다